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72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박성민·김위상·구자근

박덕흠 • 이상휘 • 강민국

박수민 • 이헌승 • 최형두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8조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328조제1항에 대해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 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468등).

이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족관계를 과거에 비해 좁게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및 제365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

- ②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대하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고소) <삭 제>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한다. 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 ②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간에 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다. 수 있다. 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③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 하지 아니한다. 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형사소 <신 설> 송법」 제224조를 적용하지 아 니하다.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第328條第1項,第2項의 身分關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 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조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 을 準用한다. 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 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 外로 한다.

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 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 는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 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 하여는 예외로 한다.